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사유 제한 및 군인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정상참작제도 정비(안 제3조)

- 1) 징계양정기준상 징계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상훈감경 대상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 차등화
- 2) 불문경고 제도 도입 등

나.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개정에 따른 서식 추가 등(안 제6조)

- 1) 「군인 징계령」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2) 「군인 징계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을 “징계유예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경고(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를”로, “징계처분등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를 “징계처분등을 받기 전 공적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훈장·포장”을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영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

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중사 이상 부사관: 대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 중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상참작 시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가 견책인 경우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서: 별지 제2호의2서식
4. 영 제11조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6호의2서식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6호의3서식.

10. 영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 별지제6호의4서식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 별지 제7호서식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제7조의 제목 “(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을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계처분등”을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제8호가목”을 “제8호나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 적용 제외 비행사실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대 /기 관 명)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소속	직위(계급)	성명
대상 사건	통보기관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사건번호		

위 사건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9조의3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8조에 따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권 자



출석통지서

징계등 심의대상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대/기관명)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자 르 는 선

출석 진술 포기서

징계등 심의대상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부 대 /기 관 명)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계급)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회 개최 일시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징계권자		징계처분일시	년, 월, 일
징계처분결과			

유의사항

「군인사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권 자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 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 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 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u>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 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 분등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지 않는다.</u>	제3조(정상참작) ① ----- ----- ----- ----- ----- ----- ----- ----- ----- -- <u>징계유예 또는 이 규칙에 따 른 경고(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를 -----</u> ----- <u>징계처 분등을 받기 전 공적은 제외한 다.</u>
1. 「상훈법」에 따른 <u>훈장·포 창</u>	1. ----- <u>훈장·포 창을 받은 공적</u>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u>국무총리 이상의 표창</u>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 창을 받은 공적 가. <u>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 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 창</u> 나. <u>위관급 장교, 준사관, 중 사 이상 부사관: 대장급 지 휘관 이상의 표창</u> 다. <u>하사 또는 병: 중장급 지 휘관 이상의 표창</u>

3.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
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
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
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 제15장 강
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성폭
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
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삭 제>

② -----
----- 「군인 징계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
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
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삭 제>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
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삭 제>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
행정은 제외한다)

<삭 제>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
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당한 행위

<삭 제>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
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삭 제>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
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
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
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
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삭 제>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정청탁

<삭 제>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① 삭제

②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

<삭 제>

③ -----

----- 영 제20조
제2항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상 참작 시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가 견책인 경우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
항까지-----

-----.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 제8조 후단에 따른 징계등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⑧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⑨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⑩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서: 별지 제2호의2서식

4. 영 제11조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5.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6.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7.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별지 제6호의2서식

9.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별지 제6호의3서식.

10. 영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의4서식

11.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

<u>른다.</u>	<u>른 항고서: 별지 제7호서식</u>
제7조(<u>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u>) <u>징계처분등의</u>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12.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 <u>별지 제8호서식</u> 제7조(<u>징계처분 등 시행세칙</u>) <u>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u>----- ----- ----- ----- ----- ---